보 도 참 고 자 료

고용노동부

배포일: 2020. 2 28(금) 총 11쪽

담당부서: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이민재(044-202-7026)
서기관 노경민(044-202-7027)
고용정책총괄과 과 장 김부희(044-202-7210)
사무관 남현주(044-202-7223)
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최태호(044-202-7404)
서기관 조형근(044-202-7406)
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이현옥(044-202-7470)
사무관 강나래(044-202-7477)
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여성철(044-202-7554)
사무관 배정대(044-202-7561)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◇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

◇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

◇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, 최대 5일 지원

– 코로나19 대응,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–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**코로나19 확산**에 따른 **고용 영향을 최소화**하기 위해 **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**과 **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**하는 대책을 추진한다.

○ 이번 고용노동부의 **'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'**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**「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」**에 포함되어 **2.28(금) 발표**되었다.

□ 대책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❶ <u>고용유지지원금 지급</u> 시 사업주가 지급한 **휴업·휴직수당 중 지원금**으로 **지원하는 비율**을 현행 <u>**2/3에서 3/4 수준***으로 **높여 지급**</u>한다.

* ▲우선지원대상기업: 2/3 → 3/4, ▲그 외 기업: 1/2(원칙) → 2/3

○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**코로나19의 영향**으로 **고용유지지원금 신청**이 **폭발적으로 증가***하고 있는 가운데, 근로자 **고용안정을 위한 지원** 확대가 필요하다는 **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**하여 **마련**된 조치이다.

* 최근 30일간 (1.29~2.27.)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: 1,621개사, 23,828명

○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,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, **1인당 기업부담분**은 **종전의 47만원**에서 **35만원**으로 **12만원 감소**(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)하게 된다.

○ **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**('20.2.1.~'20.7.31.)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**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**하면서 **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**이다.

○ **고용유지지원금 지급**은 조치계획에 따라 **고용유지조치**(유급휴업 또는 휴직)를 실시하고 **매달 지원금을 신청**해야 하며,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**3월부터 지급**될 예정이다.

※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"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"에서 가능하며, 궁금한 사항은 (국번없이)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+센터를 통해 문의

❷ 코로나19의 **지역별 확산 정도**와 **고용에 미치는 영향**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**고용안정 대책**도 **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**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.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해외감염병 NOW 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○ 이에 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」을 신설하여 **고용이 악화된 지역**의 특성에 따른 **맞춤형 고용안정 대책**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.

< **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** >

▲ 코로나19 피해기업 **무급휴업·휴직 지원**

▲ 코로나19로 인한 **직업훈련 중단** 시 **훈련생 생계비 지원**

▲ 코로나19로 인해 **일자리를 잃은 일용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** 등을 대상으로 한 **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**(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)

▲ 코로나19 피해사업장 **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**

○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**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**하여 **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**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**신속하게 선정·지원**할 계획이다.

❸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**가장 뚜렷하게** 나타나는 **여행업, 관광숙박업 등**을 중심으로 **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**한다.

○ 현재 **관광업 관련 협회** 등에서 **지정 신청이 접수**되어,

- 고용보험 **피보험자수** 증감 등 **해당 업종**의 **경제·산업·고용상황**에 대하여 **종합적으로 검토**하고,

- 이를 토대로 **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**를 거쳐 **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**할 계획이다.

○ **특별고용지원업종**으로 **지정된 업종**은 **고용유지지원금**, 전직·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**요건 완화, 지원수준 상향** 등이 적용된다.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❹ **고용위기지역**은 금년 4~5월 중 **지원기간이 만료**되는 **7개 지역**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, **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.**

* 군산시, 울산 동구, 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, 창원 진해구('18.4.5~'20.4.4), 목포·영암('18.5.4~'20.5.3)

❺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**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**가 있는 근로자는 **가족돌봄휴가**(연간 최대 10일)**를 사용**할 수 있도록 **적극 유도***할 계획이다.

* 모성보호 및 일·가정양립 제도 활용 근로자 소속 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,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 수급 근로자 대상 문자메시지 긴급 발송 등

○ 아울러,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**실질적인 도움**이 되도록 **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**에게는 **1인당 일 5만원**(부부합산 최대7 50만원)의 **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**할 계획이다.

* ❶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, ❷ 1일 5만원(부부합산 최대 50만원)을 ❸ 최대 5일간(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), ❹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

❻ **생활안정자금 융자**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**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**를 대상으로 **대폭 확대**하고, **소득 요건도 완화***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.

* (현행)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/3 이하('20년 기준 259만원) → (개정)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('20년 기준 388만원)

** 인터넷 신청: 근로복지서비스(welfare.kcomwel.or.kr)
방문 신청: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
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**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**되어 **체불임금이**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,

ㅇ **체당금 지원**과 **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**을 **대폭 확대**하여 이에 **선제적으로 대응**할 계획이다.

□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“코로나19가 **경제·고용**에 미치는 **파급효과를 최소화**하고, **조기 극복을 지원**하기 위해 **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**을 마련하였다.”고 하면서,

ㅇ “경제·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금번 마련한 지원대책이 **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**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,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**최대한 신속하게 진행**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(☎044-202-7223),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(☎044-202-7406),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사무관(☎044-202-7477), 퇴직연금복지과 배정대 사무관(☎044-202-75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

<1>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?

□ **고용유지지원금**은 경영 악화 등으로 **고용조정이 불가피**하여 **고용유지조치(휴업 · 휴직)를 한 사업주**를 지원합니다.

□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**기업**의 **어려움**이 **지속**되어 **고용유지지원금 신청**이 **폭발적으로 증가***하고 있으며,

* '19년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지원실적: 1,514개사 31,064명
vs 최근 30일간 (1.29~2.27.)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: 1,621개사, 23,828명

○ 특히, **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*** 결과, 근로자의 **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**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2.17. 자동차업계 간담회, 2.25. 관광업계 간담회 등

<2>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?

□ 고용유지지원금으로 **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(6개월)으로 상향**됩니다.

○ **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**의 **최대 3/4까지** 지원합니다. 이 경우,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.

* 지원비율: ▲우선지원대상기업: (현재) 2/3→(변경) 3/4 ▲그 외 기업: (현재) 1/2→(변경) 2/3

<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>

사 례	구 분	현 행	지원비율 상향 시(2/3→3/4)
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	휴업수당(A)	140만원	140만원
	고용유지지원금(B)	93만원	105만원 (+12만원)
	기업부담분(A-B)	47만원	35만원 (-12만원)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<3>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?

□ 아닙니다. ①**'20.2.1.~7.31.(6개월) 동안** ②**고용유지조치**(휴업 또는 휴직)**를 하고 휴업·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**는 **3월부터**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4>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(예: '20.1.1. 고용유지조치실시)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?

□ **실제 고용유지조치**가 **'20.2.1. 이전** 또는 **'20.7.31.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**는 **해당되지 않습니다.**

□ 다만, **'20.2.1. 이전부터 계속적**으로 **고용유지조치**를 **실시하는 경우** 등 1**달이라도 지원 기간(6개월)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**에는 **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**이 **지급**됩니다.

※ **사례1**	※ **사례2**
ㅇ 고용유지조치를 '19.12.1.~'20.3.31.까지 실시한 경우	ㅇ 고용유지조치를 '20.6.1.~'20.9.30.까지 실시한 경우
⇒ **'19.12.1.~'20.1.31.**(2개월) : **3/2 지원**	⇒ **'20.6.1.~'20.7.31.**(2개월) **: 3/4 지원**
⇒ **'20.2.1.~'20.3.31.**(2개월) : **3/4 지원**	⇒ **'20.8.1.~'20.9.30.**(2개월) **: 2/3 지원**

<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>

*** (가정)** 월급 200만원, 휴업수당 140만원인 노동자 **: 지원금 상향 지원**

구 분	**고용유지조치 기간 / 지원 금액**			
	'19.12월	**'20.1월**	**'20.2월**	**'20.3월**
(사례 1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**'19.12.1.~'20.3.31.**	93만원	93만원	**105만원**	**105만원**
(사례 2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**'20.6.1.~'20.9.31.**	**'20.6월**	**'20.7월**	**'20.8월**	**'20.9월**
	105만원	**105만원**	93만원	93만원

<5>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?

□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. 이번 고시는 **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**되는 **기간을 정한 것 뿐**이며, **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**은 **180일로 동일**합니다.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<6> 1일 지원금액 상한액(66,000원)도 높아지는 건가요?

○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**평균 지원금액**(42,469원),* **상한액 지급비율**(**전체의 1.3%**)을 감안하여, **1일 최대 지원금액**(66,000원, 월 30일 기준 198만원)**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.**

* '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

<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: 월 30일 기준 >

사 례	구 분	현 행	지원비율 상향 시(2/3→3/4)
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	휴업수당(A)	297만원	297만원
	고용유지지원금(B)	198만원	198만원 (동일)
	기업부담분(A-B)	99만원	99만원 (동일)

<7>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□ 먼저, 경영 악화 등으로 **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실시**하기 **하루 전까지 "고용유지조치계획서"**를 **제출**하셔야 합니다.

○ 신청 절차는 **"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"에서 가능**하며,

↳ ①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→ ②상단의 "기업서비스" → ③"고용안정장려금" → ④"고용유지지원금"에서 신청 가능

○ 궁금한 사항은 **(국번없이) 1350**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과(팀)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(http://workplus.go.kr에 연락처 안내)

□ **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**하고 **휴업·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**에 **지원금 신청**이 가능합니다.

<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>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	→	고용유지조치 실시	→	지원금 신청 (매월)	→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<8>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?

□ **아닙니다.**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**전체 근로시간의 20% 이상***을 **초과**하여 **휴업을 실시**하거나 **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**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
<9>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, 계획대로 휴업·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□ **변경된 고용유지조치(휴업 · 휴직)**를 실시하기 **하루 전까지 "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"**를 **제출**하셔야 합니다.

*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"고용유지조치계획서"와 동일

<10>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?

□ 해당 사업장의 **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**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○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.

<11>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?

□ **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· 휴직을 하지 않거나**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, **지급 제한 · 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**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12> 고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?

□ 「고용보험법」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**제21조제1항단서**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**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**하면,

○ 1년의 범위에서 **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**에 한정하여 **지원비율을 상향**할 수 있습니다.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2 **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FAQ**

1.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?

□ 코로나19 **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**, 또는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**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**이 필요하여 **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**를 대상으로

○ **1인당 일 5만원**(부부합산 최대 50만원)을 **5일 이내 기간**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(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)

2.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?

□ 코로나19 확산으로 **전국의 모든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가 휴원·개학연기** 되면서 **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**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* 전국 어린이집 휴원(2.27~3.8), 전국 유치원·학교 개학연기(3.2→3.9)

○ 다만,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**사업주의 부담** 등을 감안하여 **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**하는 방안보다는

-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**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**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

3.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?

□ **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**('20.1.20.) **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**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

○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·휴교로 인해 **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**됨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4.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□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**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**할 수 있도록 **전산시스템 등을 준비**하고 있음

○ **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**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, **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**하겠음

*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(~3월 1주),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(~3월 2주 예정)

5.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?

□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**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**

○ 따라서 **외벌이 근로자는 5일,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**간 지원함

○ 특히 **한부모 근로자**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**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**임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참고 | **코로나19 예방수칙**

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해외감염병 NOW 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